

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. 09. 09.
성 남 시 장

□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사항만 기재)

5.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및 기타
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3) 공동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A	A1-1~ A1-14, A2-1~ A2-15, A3-1~ A3-10	형태 및 외관	• 담장, 계단 등 - 담장의 높이는 0.8m 이하로 조성하고,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. (A2-10, A2-13, A2-14 블록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택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담장의 높이는 1.2m 이하로 하고,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에 별도의 재료를 보완할 수 있다. 단, 공동주택 주출입구가 있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) - (이하 생략)	기정
A	A1-1~ A1-14, A2-1~ A2-15, A3-1~ A3-10	형태 및 외관	• 담장, 계단 등 - 담장의 높이는 1.2m 이하로 조성하고,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50% 이상 투시형 담장으로 한다. (이하 삭제) - (이하 생략)	변경

7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- 제 II 편(건축부문 시행지침) 제3장(공동주택용지) 제28조(담장, 계단 등)

구 분	계획내용
제28조 (기정)	① 담장의 높이는 0.8m 이하로 한다. ② 담장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(③, ④ 생략) ⑤ A2-10, A2-13, A2-14 블록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택사업 승인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담장의 높이는 1.2m 이하로 하고, 담장의 재료는 화목 류의 생울타리에 별도의 재료를 보완할 수 있다. 단, 공동주택 주출입구가 있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).
제28조 (변경)	① 담장의 높이는 1.2m 이하로 한다. ② 담장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50% 이상 투시형 담장으로 한다. (③, ④ 생략) ⑤ < 삭제 >

☐ 관련도서: 게재생략(열람장소 - 성남시청 도시계획과)